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

[시행 2019. 12. 20.] [관세청고시 제2019-73호, 2019. 12. 20., 일부개정]

관세청(관세국경감시과), 042-481-7901

- 제10조(자율관리 보세구역에 대한 감독) ① 운영인은 회계연도 종료 3개월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 등의 적정여부를 자체 점검하고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운영인이 자율점검표를 「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」제20조에 의한 보세구역 운영상황 및「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」제16조에 의한 재고조사 결과와 함께 제출하려는 경우, 자율점검표를 다음 해 2월말까지 제출할 수 있다.
 - 1. 자율관리 보세구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
 - 2.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생략 준수 여부
 - 3. 운영인 등의 의무사항 준수 여부
 -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율점검표 등의 심사결과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 관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율점검표를 해당 년도 정기감사에 갈음하여 생략할 수 있으며, 자율점검표 미제출·제출기한 미준수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율관리 보세구역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라 정기감사를 하여야 한다.
 - ③ 세관장은 영 제184조제2항에 따라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운영실태 및 보세사의 관계법령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별도의 감사반을 편성(외부 민간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)하고 7일 이내의 기간을 설정하여 년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 -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감사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⑤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「행정조사기본법」제11조, 제17조, 제18조,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되, 이때에도 조사공무 원은 같은 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.
 - 1.「행정조사기본법」제3조 제2항 제5호에 관한 사항
 - 2. 행정조사를 긴급히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

부칙 <제2019-73호,2019.12.20.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1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